

	산업체 위탁교육 운영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07. 12. 10.
		최종개정일자	
		담당부서	기획산학처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와 산업체간의 위탁교육을 실시·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본 규정은 학칙 제54조(산업체위탁교육)에 의거 산업체위탁교육에 따른 제반 운영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2장 산업체 범위

제3조(산업체의 범위) 산업체의 범위는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하여 정한다.

제3장 전형 및 위탁관리

제4조(위탁형태) 위탁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① 단독위탁 : 위탁업체가 단독으로 소정의 인원을 대학에 학과 또는 계열별로 위탁한 경우

② 연합위탁 : 2개 이상의 위탁업체가 연합하여 우리대학에 학과별로 위탁한 경우

제5조(모집단위 및 정원) 모집단위 및 정원은 매 년도 정해지는 시행지침 및 계획에 의거 자체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제6조(지원자격) 산업체위탁교육생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.

①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

② 산업체에서 근무 중인 자

③ 산업체장의 추천을 받아 대학과 산업체위탁교육 계약체결이 가능한 자

제7조(지원 및 전형절차) 위탁업체의 추천에 의한 무시험 전형을 원칙으로 하며, 세부적인 입학전형 절차에 대하여는 대학에서 매년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

제8조(위탁교육계약체결) ① 대학 위탁생으로 합격이 확정되면 학기 개시 전일 까지 붙임의 위탁교육계약서를 작성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, 미 제출시는 불합격 또는 입학취소를 한다.

② 입학 후 전직한 경우에는 위탁교육계약을 재 체결하여야 하며, 계약서 상의 날인은 반드시 각 산업체(기관)의 대표이사가 날인한 것만 인정 한다.

제4장 교육과정 및 학사관리

제9조(교육과정 운영 및 편성) ①대학 정규 교육과정을 활용하되, 위탁산업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발·운영할 수 있다.

②학급편성은 40명 단위로 별도학급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별도학급 편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로 혼합편성 할 수 있다.

제10조(교과목 이수) 위탁생의 교과목 이수는 우리대학 학칙에 의한 졸업소요 학점을 기준으로 한다.

제11조(학사관리) ①위탁생들에 대한 학사관리는 대학 학칙 및 동 시행세칙을 준용하여 시행한다

②위탁생이 합격(입학)후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 퇴직 시 위탁계약의 해지로 보아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. 다만, 산업체의 도산,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③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위탁교육생들에게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.

④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산업체의 장과 산업체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 할 수 있다.

제12조(등록관리) ①위탁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는 위탁산업체의 책임 하에 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에 일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위탁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는 당해 학과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되,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요원 활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제5장 산업체와 상호협력

제13조(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) ①대학과 위탁교육 산업체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협조한다.

1. 교육과정 및 교재 공동개발 촉진 및 참여
2. 산업체에 필요한 기술개발과제의 발굴과 교수에 의한 위탁연구 또는 산업체임직원이나 연구원과의 공동연구 추진
3. 정규과정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의 추진
4. 교육용 실험실습시설의 공동개발 및 교육용기자재 기증
5. 학생생활지도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

②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산업체 내에 강의실 또는 실험 실습실이 제공되는 경우는 위탁생만으로 편성된 별도의 학급으로 강의 또는 실험실습 교육을 산업현장에서 할 수 있다.
2.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는 산업체위탁 임직원 중 적격자를 대학 교원 임용 절차에 의거 산업체위탁 전임교원, 겸임교원 또는 시간강사로 적극 활용 할 수 있다. 단, 산업체 임직원 중 전임교원으로 특별 채용된 자는 산업체 위탁

교육 계약만료와 함께 그 직을 사직(당연 퇴직) 한다.

제6장 위탁교육심의위원회

제14조(위탁교육심의위원회) ① 위탁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에 위탁교육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, 위원은 위탁업체 임직원 및 대학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,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, 외부위원이 1/2이상 포함 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위탁 의뢰 산업체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
2. 위탁생의 선발기준
3.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
4. 위탁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5. 위탁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에 관한 사항
6. 학교와 위탁산업체와의 상호지원에 관한 사항
7. 기타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5조(위탁교육계약서) 위탁교육을 의뢰하는 산업체와 대학 간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로 체결한다.

제16조(시행세칙)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의 시행계획 및 시행지침 그리고 대학 학칙 및 동 시행세칙과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0일부터 시행 한다.